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92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도읍・이헌승・이달희

인요한 · 조배숙 · 구자근

정점식 · 신동욱 · 유상범

김희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감사를 방해한 자,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감사자료를 인멸·은닉 또는 위조·변조하거나 이를 교사· 공모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감사 자료를 인멸, 은닉, 위조,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51조).

법률 제 호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 요 구된 정보나 자료를 인멸, 은닉, 위조, 변조한 자 또는 이를 교사 하거나 공모한 자
- 2. 제50조에 따라 제출 요구된 정보나 자료를 인멸, 은닉, 위조, 변 조한 자 또는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1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 | 제51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 |
| | <u></u> 수 |
| <u><신 설></u> |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|
| |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|
| |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| <u>에 처한다.</u> |
| | 1.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|
| |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|
| | 제출 요구된 정보나 자료를 |
| | 인멸, 은닉, 위조, 변조한 자 |
| | 또는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|
| | <u>자</u> |
| | 2. 제50조에 따라 제출 요구된 |
| | 정보나 자료를 인멸, 은닉, 위 |
| | 조, 변조한 자 또는 이를 교 |
| | 사하거나 공모한 자 |
| <u>③</u> (생 략) | 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 |